

#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

## [초과 경조사비 지급관련]

### 1. 상담내용

- 업체가 부의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20만원을 입금(17.○○) 하였고 직원 ○○○이 통장조회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10만원 반환조치 후 신고 (17.○○)
- 신고자 당부사항
  - 본인 소속부서에 불이익과 소속부서에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
  - 업체는 고의성이 없고 무지해서 송금한 것 같음.
-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담결과 (17.○○)
  - 신고자 신분비밀 철저한 보장 약속
  - ○○업체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파악 필요
  -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통보여부 결정 필요

### 2. 조치사항

가. 초과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 및 제출

- 해명자료 요청 : 한국남부발전 ⇒ 해당업체 (17.○○)
  - 법령에 정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한 경위

- 해명자료 제출 : 해당업체 ⇒ 한국남부발전 (17.○○)

-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식과 교육을 받은적이 없었고, 대가성이 없었음

나. 초과경조사비 지급관련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법원제출

-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및 초과경조사비 조사의견서 등 첨부
  - 한국남부발전 ⇒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(17.○○)

※ 현재 (18.10) 창원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예정 (18.11월)